

[별표 2] <개정 2011.11.17>

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(제6조 관련)

검사결과	포장재질	1차:	2차:
	포장공간비율	% (기준: % 이하)	
	포장횟수	차 (기준: 차 이내)	
검사성적서 발행번호			
검사일 등			
전문검사기관명			

비고

1. 포장재질은 포장차수 또는 내부·외부 포장재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. 다만, 법 제14조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2. 위 표의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의 크기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표시 내용을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.